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 11. 23.(화)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1년 10월 29일
- 회부일자: 2021년 11월 1일

##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총괄부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선정 체계 명확화(안 제12조)  
(현행)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 회의에 회부
- 정책연구용역 계약정보 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규정 강화(안 제17조)  
(현행)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  
(변경)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가 1명 이상이 평가하는 방법이나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최종보고회 개최하여 평가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

## 5. 조례안 예고

- 2021.11.3.(수) ~ 2021.11.8.(월) 특기할 사항 없음

## 6.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총괄부서’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의 범위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과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와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선정 과정에서 심의자료의 제출 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과 주요 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연구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절차를 강화하였음.

- 아울러,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정책연구에 관한 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예산안 심사 7일 전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선정에 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만을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안 심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그 밖에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의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충청북도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